

군산문화초등학교 학교시설 이용 규칙

제정	1996. 03. 31.	규정	제1호
개정	1998. 03. 05.	규정	제2호
개정	1998. 06. 08.	규정	제3호
개정	2000. 04. 01.	규정	제4호
개정	2002. 04. 01.	규정	제5호
개정	2003. 09. 24.	규정	제6호
개정	2006. 09. 24.	규정	제7호
개정	2012. 02. 15.	규정	제8호
개정	2013. 02. 06.	규정	제9호
개정	2015. 02. 12.	규정	제10호
개정	2016. 2. 15.	규정	제11호
개정	2016. 12. 19.	규정	제12호
개정	2020. 5. 8.	규정	제13호
개정	2021. 12. 13.	규정	제14호
개정	2022. 9. 26.	규정	제1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문화초등학교 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운동장
2. 학교 체육관 (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3. 학교 일반교실
4. 그 밖의 체육시설

제3조(이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해당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학교 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여건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은 교육·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및 시설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의 한계)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 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5조 (이용시간) 학교 시설의 이용시간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제6조 (이용수칙) 학교장은 개방시간 및 이용방법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안내하며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로 하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제2항~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이용료 징수금관리) 이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9조(환불규정)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교육활동, 시설공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제10조(책임과 의무)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학교 내에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축조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별지 1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2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3호 서식]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

[별표 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별표 2] 삭제

[별지 2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전라북도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신 청 인	성명		전화	
	주소		FAX	
사용시설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 용 인 원				
사 용 료				
기 타				

「전라북도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기재 내용과 같이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용 허가자 : 군산문화초등학교장 (인)

[별표 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제2항·제3항 관련)
(1일 기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7,500	12,500	1실당
시 청 각 실	12,500	25,000	50,000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6,000	17,500	30,000	
대 운 동 장	12,500	17,500	3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5,000	25,000	1실당
시 청 각 실	25,000	50,000	100,000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2,500	35,000	60,000	
대 운 동 장	25,000	35,000	6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위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